

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
----------	----

2010년 8월 13일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0년 8월 4일, 한명희 의원 외 10인
- 나. 회부일자 : 2010년 8월 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2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
(2010년 8월 13일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한명희 의원)

1) 주 문

- 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·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- 다.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.

2) 제안이유

-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 인력의 활용 극대화 및 각종 시설의 확충 등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의회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- 지방의회에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, 「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·운영조례」 제10조 등에 근거하여 구성·운영되는 것으로,
-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정치·경제·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·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어 호주제 폐지 등 법·제도적 차원의 평등은 주목할 만큼 개선이 되었으나, 아직도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성차별적 관행과 여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수립과 집행을 해소하여 ‘여성정책 주류화’의 실현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통해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「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」의 구성을 제안하였음.
- 2009년 12월31일 기준으로 서울시 여성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.4%(5,149,033명)에 해당하며, 2020년에는 51.3%로 그 비중이 증가될 것으로 추계되나,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

51.8%로 남성의 73.1%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며 (2010.6 기준), 특히 공공부문인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여성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28.3%(13,164명)임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비율은 전체의 12.7%(376명)에 그쳐 여성의 대표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남(2007.12.31 기준).

-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서울시는 2007년부터 여행(女幸)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존 여성정책의 주류를 형성해 온 돌봄과 일자리 창출 등 복지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도시계획, 도로, 건축, 교통, 문화 등 정책 전 분야로, 여성장애인 및 성폭력, 성매매 등의 소수자 중심에서 여성 일반으로, 나아가 정책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전적·예방적으로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각도의 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는 실정임.
- 정부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·개편하였으며 국가의 성평등 지표체계 구축 및 관리, 성별 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, 여성친화도시 확산, 교육 훈련 및 취업지원의 확대 등을 통하여 여성 경제활동 지원 강화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·실행하고 있는 실정인 바,
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여성 친화적인 사회·문화 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동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사안이라 판단됨.
- 다만 동 안전의 경우 주된 집행부서가 여성가족정책관이라 이를 소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업무와 중복수행되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,

여성정책의 범위가 복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 생활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 공무원 조직과 주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, 성인지 예산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'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'되어야 한다는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56조제1항의 특별위원회 구성요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출석위원 12명)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22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10년 8월 4일

발의자 : 한명희 의원 외 10인

1. 주 문

- 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·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수는 15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
- 다.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한다.

2. 제안이유

-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 인력의 활용 극대화 및 각종 시설의 확충 등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의회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
-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·운영조례 제10조

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

-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높아지고,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으나, 여전히 우리 사회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관행이 자리 잡고 있어, 민주적 사회 발전의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.
- 특히,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면서, 기존의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모델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가부장적인 가족모델의 강요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.
-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성차별적 관행 및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전 과정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정책적 영향 및 결과를 예견하고 집행할 수 있는 ‘여성정책 주류화’의 실현을 구체화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.
-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와 여성 인력의 활용 극대화 및 각종 시설의 확충 등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의회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‘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’의 구성을 결의한다.

2010. 8 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